

지원사업 안내

1

기술보증

개 요 :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,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

대상기업

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,000인 이하이고, 총자산액이 1,000억원 이하인 기업

업체당 보증한도

- 일반보증 최고한도는 30억원이고, 시설자금 등은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하며, 기업의 기술력,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(운전/시설)

보증료

- 기준보증료율에 감면과 가산사유에 따라 보증료율을 가감하여 산출하며, 연 0.5%~3.0%까지 차등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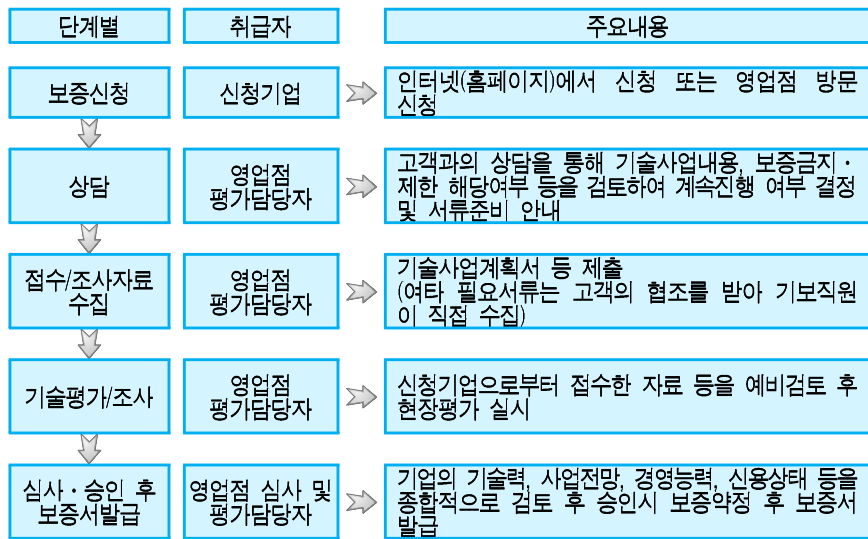
주요 보증의 종류

- 대출보증: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
- 어음보증 :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어음, 받을어음,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
- 무역금융보증: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
- 구매지금융보증: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
- 문화산업완성보증: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후,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보증지원

보증제한

-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보증이 금지되며, 휴업중인 기업,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,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, 대표자 등이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,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

사업처리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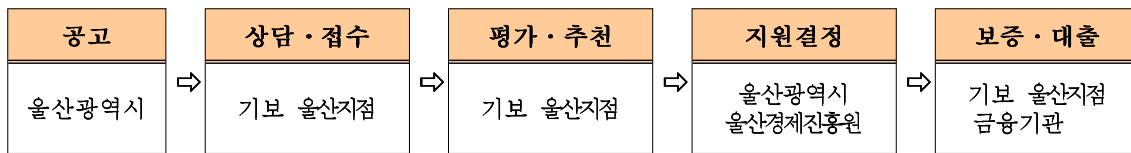
신청서류

	구분	자료명	고객협조사항	
고객 준비 서류	작성서류	▶ 기술사업계획서	- 기보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제출	서식
	준비서류	▶ 주주명부 ▶ 임차계약서사본 (사업장, 거주주택)	- 고객이 제출하거나 현장조사시 준비	-
기금 수집 서류	대법원 등기	▶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▶ 부동산등기부등본	- 기보 직원이 직접 수집 (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)	-
	행정정보	▶ 주민등록 등·초본 ▶ 지방세납세증명 등	-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	사전 동의서
	금융거래	▶ 금융거래확인서	-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	
	세무회계자료	▶ 사업자등록증명 ▶ (국세)납세증명서 ▶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▶ 표준재무제표증명	-고객(또는 세무대리인)이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전송기능을 통해 수집기관인 "한국기업데이터(주)" 로 온라인 전송	재무 데이터 제출

2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One-stop 보증

개 요 : 기보의 기술평가를 통해 울산시의 경영안정자금(기술혁신자금)을 One-Stop으로 지원하여 고객편의 및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신규 도입된 제도

운영체계



대상기업

-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
 - 벤처기업
 - 이노비즈기업
 - 개업후 7년내 신기술 제조업 및 창업성장 분야 영위기업

※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일 현재 “울산광역시 사·구·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” 수혜 중인 업체

지원한도 및 대출조건

- 업체당 4억원 이내
- 2년거치 일시상환, 1년거치 2년분할상환, 2년거치 2년분할상환
- 이자차액보전 : 1.5%~3%

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

개 요 :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가능성을 창업前에 예측 가능토록 하여 “준비된 창업”을 통한 성공창업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

운영체계

창업 前 기술평가	기술평가를 통해 보증 지원 가능 여부 및 금액 결정
↓	
창업 中 창업멘토링	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실제 창업에 필요한 창업정보(창업절차·교육 등) 제공 등 창업멘토링 실시
↓	
창업 後 보증 심사· 보증 취급	창업後(기술평가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) 기술사업계획 등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심사 및 보증 취급

대상기업

- 우수기술·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
 - 지식문화, 이공계챌린저, 기술경력·뿌리창업, 첨단·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
 -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, 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, 예비창업자 지원사업(시제품 제작지원 등)에 선정된 자
 - 기타 우수 기술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
-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
 - 교수, 연구원, 기술사 및 기능장, 특급기술자

대상채무

- 운전 및 시설자금 (사업장 임차자금 포함)
- 지원한도(창업분야 및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)

창업분야	CCC등급	B, BB등급	BBB등급	A등급이상
일반창업	1억원	3억원	5억원	
전문가창업	1억원	3억원	7억원	10억원

우대사항

- 보증료율 0.5% 감면
- 100% 전액보증
-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

※ 예비창업자

- 법인기업 창업을 준비중인 자 :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
- 개인기업 창업을 준비중인 자 :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

< 기술보증기금 >

4

기술창업보증(맞춤형 창업성장 분야)

개 요 : 전문인력에 대한 창업지원 확대 및 기술창업기업 유형별로 적합한 창업성장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제도

대상기업

- 창업후 7년이내 기술창업기업으로서 아래 해당기업
: 창업초기기업(3년이내), 창업중기기업(3년초과 5년이내),
창업후기기업(5년초과 7년이내)
 - 지식문화 창업
 - 이공계 챌린저 창업(실제경영자가 이공계 출신자)
 - 기술경력·뿌리 창업(실제경영자가 만40~59세 이하이고, 동업계경력 10년 이상)
 - 첨단·성장연계 창업(산업통상자원부 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”에 의한
첨단기술·제품 확인기업,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등)

우대사항

- 보증비율 우대(90%~100%), 5억원까지 보증료 0.3%~0.5% 감면
 - 다만, 보증금액 1억원까지는 1.0% 고정보증료율 적용
- 창업후 3년이내 기업으로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기술사업평가등급 CCC등급
지원 가능

5

청년창업 특례보증

개 요 :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

대상기업 : 접수일 현재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17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

특례보증 지원한도

기술사업평가등급	지원한도
B등급 이상	3억원이내
CCC등급	1억원이내

우대사항

- 보증료 0.3%(고정요율) 적용
- 보증비율 95% 부분보증으로 운용(다만, 창업후 1년 이내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)

6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

개 요 :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신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,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·간접으로 고용창출을 유도

대상기업

구 분	분 야	대 상 기 업
고용창출 (Track1)	점핑잡 (Jumping-Job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% 이상 증가한 기업
	쉐어링잡 (Sharing-Job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정규직전환)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▶ (여성고용)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▶ (장애인고용)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▶ (마이스터고 등 고용)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▶ (지방고용) 주사업장이 비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이외)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▶ (일자리안정)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
고용유지 (Track2)	베스트잡 (Best-Job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* 다만,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 제외

우대내용

분 야	주 요 내 용	우대사항
고용창출 (Track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을 대해 보증지원 (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) ▶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,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증비율 95% • 보증료 0.4%p 감면
고용유지 (Track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을 대해 보증지원 ▶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증비율 90% • 보증료0.3%p 감면

7 혁신성장산업 지원 제도

개 요 :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, 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산업혁명 관련 사업(기술)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

대상기업

분 야	대 상 기 업
인더스트리4.0 퍼스트보증	▶ IoT, AI,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(기술) 영위기업 • (핵심기업)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• (일반기업)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
4.0스마트팩토리 보증	▶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및 공급기업(예정기업 포함) • (참여기업)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기업 또는 기선정 기업 •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납품이력 보유기업

우대내용

분 야	주 요 내 용	우 대 사 항
인더스트리4.0 퍼스트보증	▶ 기존 상품 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	• 보증비율 : 핵심기업 95%, 일반기업 90% • 보증료 : 핵심기업 0.3%p 일반기업 0.2%p 감면
4.0스마트팩토리 보증	▶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과정(신청 및 선정단계)에서 '공급기업'과 '참여기업'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	• 보증비율 우대(90%) • 보증료 0.2%p 감면

8 R&D평가 특례보증

개요 : 기업의 자체 R&D투자 활성화를 위해 R&D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, R&D 개발·사업화단계로 구분하여 자금지원

대상기업

- 개발단계

구분	주요내용
개발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과제)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• 대상자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연구개발자금)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·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- (개발완성자금) 디자인,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

- 사업화단계

구분	주요내용
사업화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과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&D 과제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&D 과제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&D 과제 • 대상자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&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

우대내용

- 보증비율 우대(개발단계 보증 95%~100%)
- 보증료 0.3% 감면

개 요 : 특허청과의 ‘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’에 의해 기술의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조기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

대상기업

-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‘B등급’ 이상인 기업
-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,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인 경우에 한함

지원한도

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10억원이내

평가료

-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료 전액 지원

우대사항

- 보증비율 우대(90%~95, 보증료 0.3%~0.5% 감면)

개 요 : 우수 지식재산(IP)의 창업·인수·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, 등록된 지식재산(IP) 등에 의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,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지원

대상기업

- 지식재산(IP) 평가보증
 -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(전용실시권자 포함)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'B등급' 이상인 기업
- 지식재산(IP) 인수보증
 - 지식재산(IP)을 인수·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(IP) 인수자금, 기술완성화자금, 양산자금을 지원

평가료 지원

- 지식재산(IP) 평가보증
 - 협약 금융기관(우리, 국민, 신한, 기업, 대구, 하나 은행)에서 평가료 지원
- 지식재산(IP) 평가보증
 - 업체에서 부담

우대사항

- 보증비율 우대(90%~95, 보증료 0.3%~0.5% 감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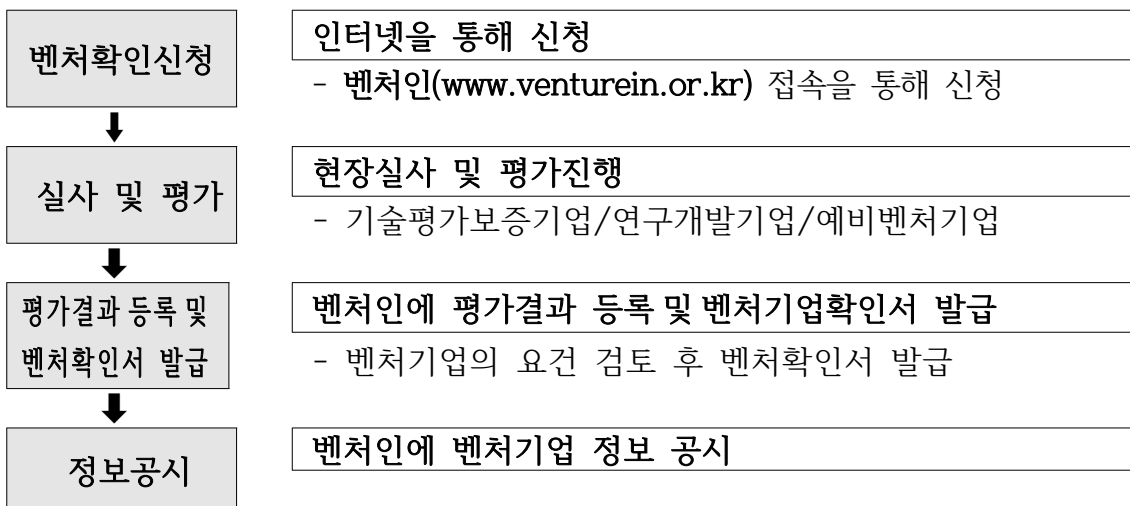
11 벤처확인평가

평가대상 및 요건

벤처유형	벤처요건
기술평가보증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■ 보증·대출금액 8천만원이상일 것 (창업후 1년미만 4천만원) ■ 보증·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% 이상일 것
연구개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,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■ 신청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~10% 이상일 (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적용 배제) ■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
예비벤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개인 ■ 기술성,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

* 벤처투자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전담

평가절차



12 이노비즈 인증평가

개 요 :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
신청자격 및 선정기준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신청일현재 설립후 3년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(대상분야 : 전 업종)
선정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,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
선정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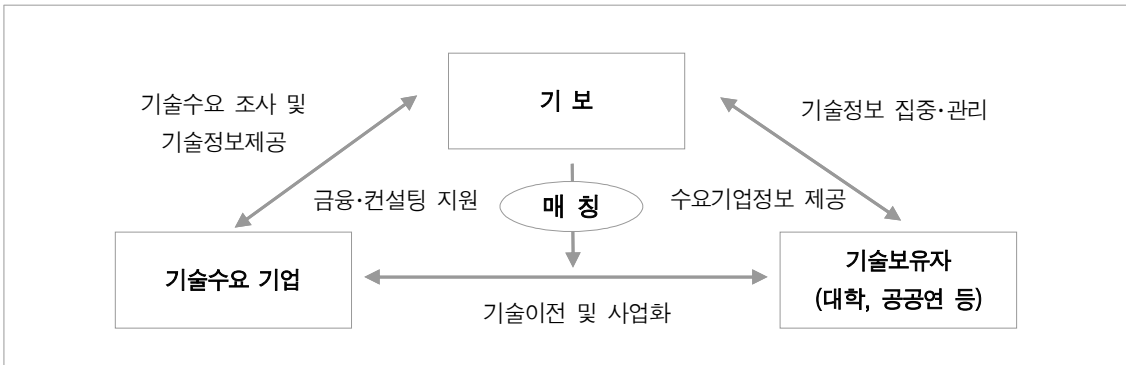
평가절차



13 기술이전 · 사업화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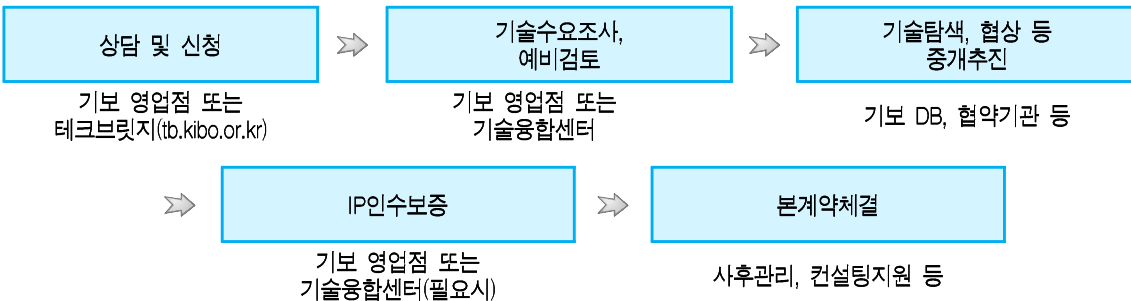
개 요 : 개발기술의 사업화 소요기간 단축 및 개발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, 연구소 등이 보유한 특정기술이나 산업재산권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, 기술보유자 또는 기술수요자로부터 의뢰 기술 또는 기술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,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제도

지원내용



-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
-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
- 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지원

업무절차



14 보증연계투자

개 요 :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·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보증·투자 복합상품으로, 창업 초기·R&D·미래성장 부문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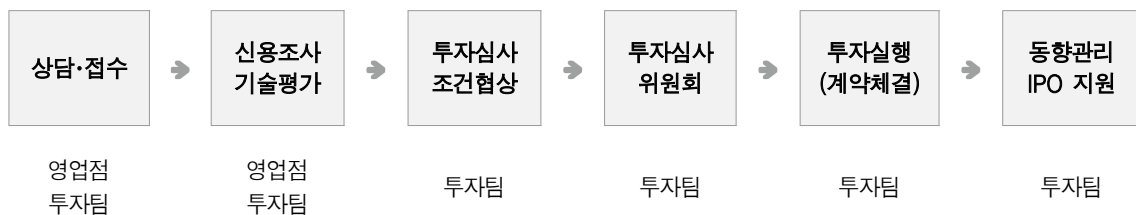
지원대상

- : 보증 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,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
 -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 기업
 -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I5등급 이상
 - ※ 단,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,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등급 TI4등급 이상이어야 충족
 - 법상 벤처기업 (또는 이노비즈기업)

지원내용

- 투자종류 : 주식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
- 투자한도 : 업체당 30억원 (보증금액 2배 이내, 보증금액 포함 100억원)

처리절차



문의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☎ 052-220-7900